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」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신 설>	개 정[2] 2026. 01. 01.	
제9조(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	**제9조(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**	
①~② (생 략)	①~② (현행과 동일)	
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·의결한다. 다만,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담당부서로부터 해당 내용을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	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·의결한다. 다만, 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.	조정·의결 의제에서 보고의제 분리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동일)	
<신 설>	④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부서로부터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1. 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 중 법령 또는 관련 규정 제·개정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경미한 제도개선 2. 제3항제4호에 관한 사항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3. 제3항제5호에 관한 사항 중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, 경고 등 경미한 수준의 조치 결과	보고의제 상세내용
④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한다.	⑤ (현행 ④과 동일)	조항 신설에 따른 번호 수정 (이하 동일)
⑤ 내부통제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, 논의 사항은 서면·녹취 등의 방식으로 최소 5년간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	⑥ (현행 ⑤과 동일)	

제11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)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6. (생 략) <신 설>	**제11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)**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6. (현행과 동일) 7. 이 기준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·준수실태에 대한 점검·조치	역할 강화 문구 추가
<신 설>	8.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"라 한다), 감독(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"감독"을 말한다) 및 검사(법 제50조에 따른 "검사"를 말한다)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	
7. 제18조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	9. (현행 7.과 동일)	조항 신설에 따른 번호 및 자구 수정 (이하 동일)
8.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(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)	10.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(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)	
9. 제8조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 관련 내부규정 등 수립에 관한 협의	11. (현행 9.과 동일)	
②~④ (생 략)	②~④ (현행과 동일)	
<신 설>	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보고하는 의제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·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.	역할 강화 문구 추가

제36조(성과보상체계의 평가 및 논의) ① (생 략) ②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매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기 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.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 확인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 관련 임직원등에게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 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, 검토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(내부통제위원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④~⑥ (생 략)	**제36조(성과보상체계의 평가 및 논의)** ① (현행과 동일) ②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매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.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 합의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 관련 임직원등에게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 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, 필요시 성과평가지표(KPI) 조정 등을 포함한 성과보상체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,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검토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(내부통제위원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)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④~⑥ (현행과 동일)	성과보상 체계 사전합의 의무화 사전합의 관련 개선요구권 문구 개정